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9530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4나7904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953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14 선고 2011나21749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12. 30 선고 2007가합727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1. A

2. B

3. C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1.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성남시

판결 선고 2014. 1. 16.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9. 14. 선고 2011나2174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N

이 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광장 중 도로시설로 볼 수 있는 교통광장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광장 및 광역교통시설광장의 면적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서 제외하고, 광역교통시설분담금(영덕-양재도로 분담금, 신분당선 부담금, 기타 광역교통처리비용)은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8조 제1항,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성남시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구 주택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간선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즉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도로에 연결시키는 도로는 그 길이나 폭을 묻지 않고 전부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면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길이 200m 이하이거나 폭 8m 미만인 도로면적은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공익사업법, 구 주택법 관련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① 교통광장, 수도용지, 배수지, 가압장, 하수처리장, 오수중계펌프장 용지비가 생활기본시설 용지비에 포함되고, ② 도로 및 포장, 가로등, 지하차도, 터널, 교량(육교 등), 교량(하천) 설치비 전액과 우수, 오수, 상수도 공사비 전액 및 토공, 부대공, 조사설계비, 확정측량비 중 생활기본시설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생활기본시설 조성비에 포함되며, ③ 직접인건비, 판매비와 관리비, 기타 비용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 관련 금액이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라.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변전소 용지비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업주체가 전기를 공급하는 자에게 해당 전기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지를 택지조성원가 이상으로 유상공급하였다면 그 용지비가 분양대금에 전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살피건대, 을가 제7호증(이주자택지 공급단가 확정) 등에 의하면, 피고들은 변전소 용지를 한국전력공사에게 유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채 변전소 용지가 무상공급되었음을 전제로 그 용지비가 생활기본 설치비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박병대

대법관양창수

대법관고영한

주심대법관김창석